대한관세법인 N E W S LETTER

2018.SEP



● 관세청, 미 301 조 관련 우리나라 기업 통관애로 지원 -'한-중 연결공정 제품'원산지 애로해소 특별지원

최근 미국의 무역법 301 조에 근거한 대 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청이 '미 301 조 통관애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업체의 원산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업체의 경우, 최종 원산지가 '한국이냐', '중국이냐'에 따라 미국 통관시 관세부과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우리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중국간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원산지가 한국산일 경우, 한-미 특혜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일 경우,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된다.

<u>따라서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대한</u>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업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

- ㅇ 첫째, 미국의 통관제도(정보)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① 미국의 대 중국 관세부과 품목리스트(List 1, 2, 3)
- ② 미국 비특혜 원산지 기준(19 CFR 102*)
- * 미 관세당국(CBP) 직원이 실무상 적용하고 있는 규정
- ③ 미국 CBP 운용중인 원산지 사전판정, 품목분류 사전 심사제도와 원산지 결정 사례 검색 방법을 안내하여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관세청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안내한다. 이는 한-중 연결공정 제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를 통해, 업체의 보복관세 해당 품목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 <u>o 셋째, 각 본부세관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6개)활용 안내로, 애로 업체에 대한 원산지 규정, 기준, 사후검증 대비에 대한 상담을 적극 지원하기로</u>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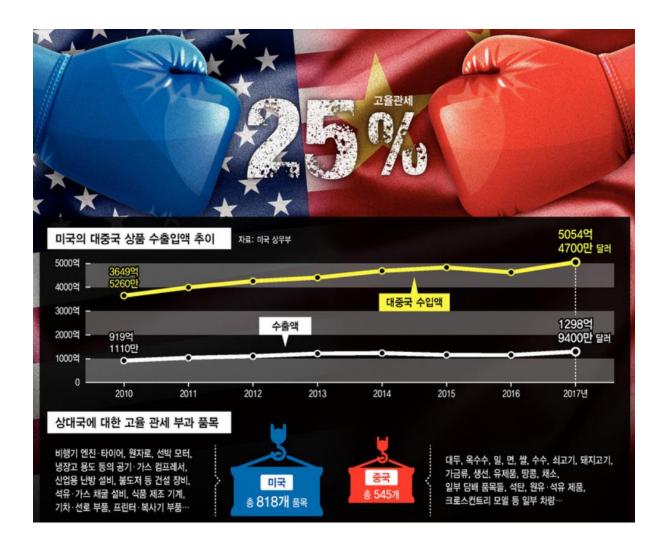
한편, 현재 우리 업체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실적과, 미국 수출실적을 동시에 가진 업체는 약 10,000 여개로 추산된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중, 보복관세 관련 품목(1 차, 2 차)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 결정관련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제조·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생성된 제품

^{**} 미국, 중국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기준 : 원산지 기준 (수출국 기준 아님)

<mark>#미중 무역전쟁</mark>



※미국의 대 중국 3단계 관세부과 계획

구분	1차	2차	3차
품목수	818개	279개	6,031개
	(IT ·기계 등)	(설비·장치 등)	(농축산물 등)
총금액	340억\$	160억\$	2,000억\$
관세율	25%	25%	10%~25%
발효일	'18.7.6	'18.8.23(예정)	미정



2018 년도 상반기 해외직구 규모는 1,494 만건·13 억 2 천만불로 2017 년도 상반기 1,096 만건·9 억 7 천만불 대비 건수기준 36%, 금액기준 35% 증가하였다.

2018 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이 2,650 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해외직구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또한 중국 광군제·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하반기에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추이에 비추어보면 올해 해외직구 규모는 사상 최초로 20 억불을 돌파했던 2017 년의 기록(21 억 1 천만달러)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해외직구 증가세를 이끈 요인을 세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 전자제품 >

가장 큰 요인은 중국 직구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발 직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 배 이상 급증하였다.

특히 중국 생활가전 제품의 약진이 가장 두드러지는데,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들을 출시한 결과 중국 전자제품 직구는 '18년 상반기에 이미 '17년 한해 직구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중국산 무선진공청소기가 직구족의 입소문을 타며 전년 동기 대비 8 배(12,174 건→102,579 건)이상 급증 하였으며 미세먼지 이슈가 지속되면서 공기청정기도 전년 동기대비 2 배(78,750 건→172,016 건)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산 전자제품의 강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물품을 선호하는 국내소비자들의 실용적인 소비패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② 미국 건강기능식품 >

또한, 해외직구 전통의 강호인 미국 건강기능식품이 직구족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에서 직구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18 년 상반기에 260 만건으로, 전년 동기(200 만건)대비 33%나 증가했으며 단일 국가·단일 품목군에서 우리나라 직구족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소비 풍조와 맞물려, 국내 제품에 비교해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의 매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 ③ 일본 완구·인형류 >

세 번째로는, 최근 일본의 프라모델·피규어 등 완구·인형 제품군이 해외직구 규모 증가에 한몫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젤리·초콜릿 등 식품류 직구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완구·인형류(14%)가 식품류를 처음으로 제치고 올 상반기 가장 많이 반입되었다. 이는 국내 소비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키덜트족이 프라모델·피규어 강국인 일본 직구시장으로 구매처를 확장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해외직구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별 해외직구 점유율은 미국 > 중국 > 유럽 > 일본 순이다.

국가별 점유율(건수기준)은 미국이 53%로 여전히 1 위를 기록하였으나 '15 년 73%에서 '18 년에는 53%로 3 년 사이 점유율이 20%p 감소하였으며, 점유율 3 위인 유럽과 4 위인 일본 역시 비중은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국가별 점유율 2 위인 중국의 가파른 성장세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의 국가별 점유율은 '17 년 유럽을 제치고 2 위에 오른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하여 '17 년 17% 수준에서 더욱 늘어 '18 년 상반기 23%를 기록하였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해외직구 시장의 판도도 기존의 미국·유럽 중심에서점차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양분이 예상된다.

품목별 해외직구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해외직구 인기 품목인 건강기능식품이 308 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며 여전한 강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큰 품목으로는 ①의류가 192 만건으로 60% 증가율을 기록하며 건강기능식품의 뒤를 이어 해외직구 반입량 2 위를 기록했으며 ②완구·인형 82 만건·49%증가 ③서적류가 13 만건으로 44%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전자제품은 168 만건이 반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TV 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09%(20,496 건 \rightarrow 42,847 건)나 증가하였는데, 평창동계올림픽과 러시아 월드컵 등 대형스포츠 이벤트 특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선풍기·에어컨 등 냉방기기 직구 반입량도 99%(14,923 건→29,713 건) 증가하였는데 이는 111 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에 냉방기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EO 수출화물 통관시간, 일반화물 보다 크게 감소"

관세청은 최근 개최한 중국 및 홍콩 관세당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이행협력 실무회의를 통해 확인한 결과 AEO 수출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이 일반화물보다 크게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 제도는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교역국 19 개국 관세당국과 AEO MRA 를 체결하고 주기적인 이행실무회의를 통해 상호인정약정 혜택이 기업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MRA 체결국은 캐나다, 싱가폴, 미국, 일본, 뉴<u>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u> 이스라엘, 도미니카, 인도, 대만, 태국,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등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중국 청도에서 '한·중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우리 AEO 기업 수출물품*이 중국세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일반화물에 비해 79% 단축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세관에서의 우리 AEO 기업 화물 검사율도 일반화물에 비해 25%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고 전했다.

이러한 통관혜택은 전년도에 비해 통관시간이 72%, 검사율이 30%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은 연간 118 억원의 검사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AEO 화물의 통관혜택은 이달 1일 개최된 '한·홍콩 관세당국 AEO MRA 이행실무회의'에서도 확인되었다.

홍콩에서의 AEO 화물 검사율은 일반 화물에 비해 33% 수준으로 낮았으며, 2016 년에 비해 43% 감소된 결과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간 4억원의 검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제도가 이미 77 개국에 도입되어 있으며, 최근 외국 관세당국 또는 해외바이어들이 우리 수출기업의 AEO 인증 여부를 더욱 빈번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EO 인증은 기업이미지 제고와 해외판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AEO 프로그램 참여에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절차



대한관세법인에서는 AEO 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각 공인기준별 다양한 실적을 발판으로 정확하고 빠른시일내에 AEO 공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AEO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요.

*담당관세사: 서원희 관세사(070-8670-1752), 이강학 관세사(070-8670-1774)

→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세관장 확인 품목 확대... 갑질·안전 규제 강화하는 관세청

조현준 효성 회장이 최근 해외에서 2000 달러(약 226 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사 갖고들어오다 신고를 안 해 세관에 적발됐다. 예전엔 그냥 넘어가거나 총수 의전 혜택을통해 손쉽게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번엔 강화된 세관 검사로 빠져나가지 못했다.

세관 당국은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유착 논란과 밀수·탈세 의혹 등으로 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공항과 항만에 재벌 총수의 과잉 의전을 제한하고 휴대품 대리운반등을 불허했다.

또 무단 대리운반자를 세관구역에서 퇴출시키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100% 개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밀수 통로 의혹을 받던 공항의 상주직원 통로에 대해서는 세관 감시상황실에서 실시간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유받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항공사의 파우치와 플라이트백 등은 반입 내역 제출과 세관 검사 결과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 건강, 사회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세관장 확인' 품목도 확대한다. 세관장 확인은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화학물질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마약류·무기 등과 같이 사회적 비용(위험)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부터 세관장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선 통관, 후 확인'을 받는 일반 물품과 달리 '선 확인, 후 통관' 절차로, 불량·유해 물품 반입을 국경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

기업들의 불편과 통관 지연에 따른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국민안전 보호와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통관 요건을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은 총 66개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 중세관장 확인 대상은 46개(9개 중복) 법령이다.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한 수출법령 11개, 약사법·식물방역법 등에 적용되는 수입법령 35개다.

아예 품목 전체를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수입량과 적발 실적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지정 실익이 낮거나 사후 관리가 가능한 품목을 정비할 수 있도록 '인&아웃' 제도도 도입한다.

<mark>#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mark>



해외여행시 구매하는 물품은 USD 600까지는 면세이며 해당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시면 최대 15 만원 범위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해드립니다.

단, 자진신고 없이 휴대하여 입국하다 적발되는 경우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 'FTA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 -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연간 8 억원 원가절감 효과 거둬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윤이근)은 8월 16일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에 대한 원산지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연간 8억원의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는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원산지 충족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수출기업이 FTA 를 보다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최근 A 사는 서울세관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지원 서비스를 한다는 보도자료를 접하고, 유럽에서 수입한 핵심부품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을 올해 7월 서울세관에 신청했다.

A 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해 유럽 등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로 한-EU FTA 협정 체결이후 많은 제품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유럽 수출시 원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았으나, 일부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세관은 FTA 전문가 2 명을 투입해 원재료, 생산공정, 관련 서류 등을 현장 확인한 후, 한-EU FTA 는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한국산 재료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국내에서 충분한 생산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동 품목은 한국산으로 판정했다.

A 사는 원산지 사전확인을 통해 앞으로 이 제품도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연간 8 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A 사의 경우처럼 FTA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원가 절감 및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국은 검증 노하우를 활용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대응절차 등을 안내해,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배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FTA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 시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으로 과세 및 관세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정부, '2018 년 세법 개정안' 발표

<u>그 동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납세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u> <u>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해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격이 아닌</u>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할 예정이다.

또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 범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 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 미제출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그동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해 과세함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법」제 31 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부터 제 35 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까지의 방법을 기초로 과세할 예정이다.

이때 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 전 납세자와 협의를 거치거나 의견 진술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범위 확대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 범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거래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한정하던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사전심사 대상을 특수관계자와 같이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과세당국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사전심사 신청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관세 체납처분 유예 근거 마련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애초 납부계획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않는 등 관세체납의 특성에 맞는 체납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전한 관세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회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내년 1월 1일 이후 체납처분 유예 신청 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일괄 납부 시 무담보 원칙 도입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의 신청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괄납부업체는 납부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해야 했지만, 내년 7 월 1 일부터는 '無담보 원칙(Negative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관세법」및「환급특례법」위반자, ▲관세 등 조세 체납자, ▲최근 2 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등은 예외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달라진 하반기 관세행정, 놓친 건 없나요?" 관세청, '2018 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 발간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2018 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와 중복되지 않은 제도 위주로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시행일 : 2018 년 8월 1일)

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민 의식의 변화와 「관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했다.

납세자가 권리헌장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령 조문 형태를 별지서식 형태로 바꾸고, 납세자 동의 없는 장부의 일시보관 금지 등 납세자 권리 관련 「관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존의 6 가지 권리를 10 가지로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고시명을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에 관한 고시」로 바꾸고, 기존 조문 형태의 권리헌장 내용을 별지서식 형태로 새로 구성했다. 또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세조사 대상의 선정, 개시부터 종결, 권리구제 절차까지 일련의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순차적으로 열거했다.

■ 물품 검사에 따른 소액 손실보상 지급절차 간소화(시행일 : 2018 년 하반기 中)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 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소액이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세관장 직권으로 빠르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물품 검사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 세관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실보상금 청구액이 소액인 경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세관장이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등 손실보상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며, 기준금액 액수는 현재 검토 중이다.

■ 현금담보 제공 및 반환절차에 자동이체 방식 도입(시행일 : 2018 년 하반기 中)

현금담보 제공 시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현금담보를 납부하면 세관 직원이 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현금담보 반환 시에도 세관 직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산으로 담보금 반환을 지시하면, 금융기관은 납세자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다.

관세청은 현금담보의 24 시간 납부가 가능해지고 납부 사실도 전산으로 바로 확인할수 있어 재수출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 FTA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간소화(시행일 : 2018 년 하반기 中)

원산지 증빙서류의 전자적 보관방법을 확대한다. ERP 와 같은 기업의 자체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전자문서를 적정한 자료 보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사업장 환경에서 관련 서류의 인쇄·관리·보관에 따른 직·간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원본 분실 등에 따른 위험 부담 감소로 FTA 활용률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 '유니패스(UNI-PASS)' 기능 개선(시행일 : 2018 년 11 월 中)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유니패스(UNI-PASS) 기능이 일부 개선된다. 먼저 이용률이 높은 메뉴를 메인화면에 전면 배치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비로그인, ID/PASS 로그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상태별 제공 정보 및 이용 범위를 차별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사용자 중심의 화면 재구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유니패스의 기능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보세공장 특허요건 완화, ▲보세판매장 특허공고 확대, ▲보세판매장
운영인 업무사항 등 보고기한 개선, ▲항공물류 원활화를 위한 하기신고 절차 간소화,
▲환급신청 서류의 온라인 제출 허용, ▲영업등록증 발급절차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